



2004년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지원사업 안내

특허사업화 성공으로 가는 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04년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지원사업 안내

특허사업화 성공으로 가는 길



2004년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지원사업 안내

● Vision

21세기 지식재산 강국 실현

특허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Mission

지식재산 창출



Let them have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개인,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토록 도우며,

지식재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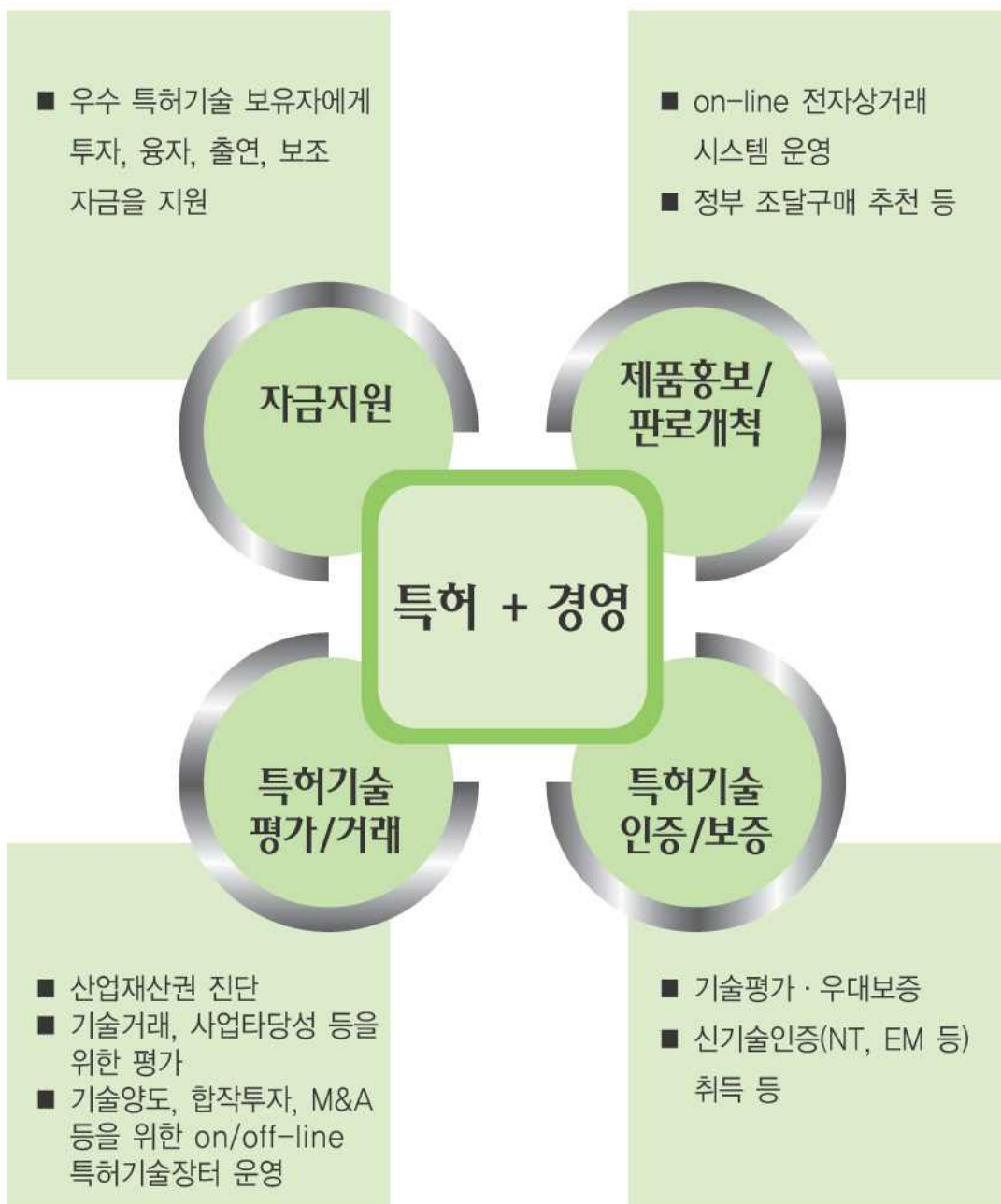
Let them optimize IPRs
개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도우며,

지식재산 보호



Let their IPRs be protected
개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준다.

● Main Services



Contents

협의회 소개

10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소개

12

2004년도 협의회 지원계획

자금지원

20

신제품개발자금

20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23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

26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29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3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5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39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42

창업자금

42

신기술창업보육(TBI)자금

44

중소·벤처창업자금

48

양산 및 시설자금

48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51

특허투자조합

53

특허평가 및 거래자금

53

특허기술평가지원

60

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62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64

특허기술장터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65

우수기술수출지원사업

68

연구개발 및 권리화자금

68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70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기술개발자금

72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75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77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80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82

산업재산권진단사업



간접지원

86	특허정보제공
86	특허기술정보조사분석(Patent map) 보급
87	권리화지원
87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88	전문인력양성
88	전문인력양성사업
91	기술거래전문인력양성
92	기술·경영지도
92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94	경영·기술지도사업
95	기술·경영지도
96	디자인컨설팅사업
98	기술인증·보증지원
98	기술우대보증
100	기술평가보증
101	신기술인증(NT, EM 등)지원사업
102	기계공제조합 하자보증우대지원
103	기술평가·거래지원
103	발명의 기술가치평가
104	기술가치평가
105	특허기술사업성평가
106	IP-Mart(인터넷 특허기술장터)
107	기술이전DB 서비스
108	지역기술이전거점구축
109	기술이전 및 평가정보지원
110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110	우수특허제품 e-마켓플레이스구축사업
112	국제전시회 출품지원
114	우수발명우선구매추천
115	기술이전설명회
116	중소기업제품홍보지원사업
118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협의회 소개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소개
2. 2004년도 협의회 지원계획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소개

■ 설립근거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 1999년 6월 15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설립됨

■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23조의2(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특허기술사업화협회의의 구성)

■ 사업목적

정부의 각종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지원제도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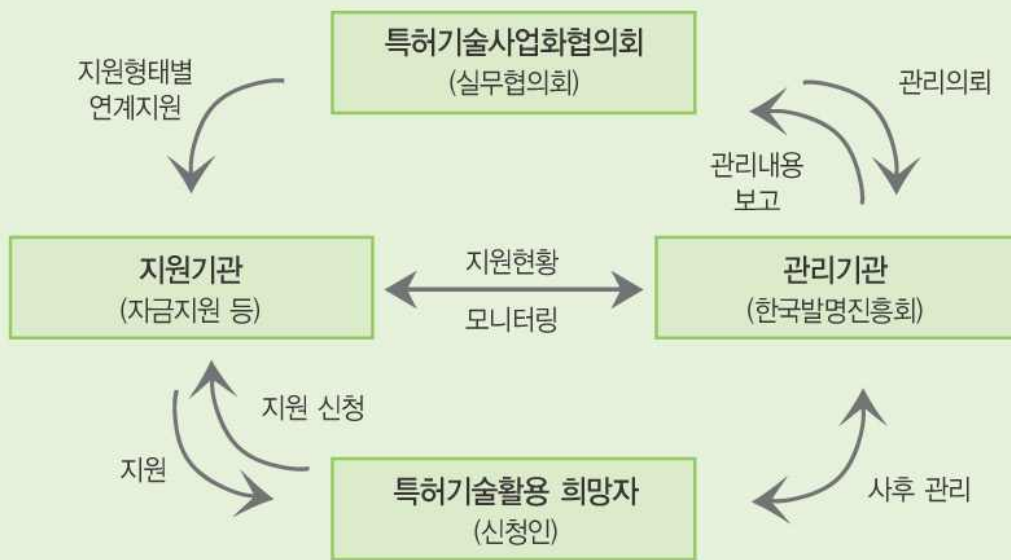
- 우수 특허기술 보유자가 사업화에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 우수 특허기술의 창출과 그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기술력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 추진현황

1. 대통령 업무보고 ('99. 6. 15)
 - 산·학 협동체제를 보완하고,
 - 특허 등 개발기술이 사업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2. 「특허사업화 추진방안」작성 ('99. 8)
 -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자부·중기청·특허청 등 10개 기관의 연계 체제를 구축
3. 「특허사업화 추진방안」 및 「특허사업화협의회 운용요령」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99. 9~10)
4. 특허사업화협의회 운용요령(산자부훈령제21호) 제정('99. 11. 11)

5.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운영세칙 제정('99. 11. 16)
6. 1차 특허사업화협의회 개최('99. 12. 3)
7. 1차 특허사업화실무협의회 개최('00. 2. 10)
8. 2차 특허사업화실무협의회 개최('00. 8. 25)
9. 2차 특허사업화협의회 개최('01. 3. 2)
10. 3차 특허사업화실무협의회 개최('01. 8. 3)
11. 3차 특허사업화협의회 개최('02. 1. 29)
12.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사업화협의회 법제기구화('02. 12. 5)
13. 특허관리특별회계법(세입 및 세출) 개정('02. 12. 5)
14. 4차 특허사업화협의회 개최('03. 3. 14)
15. 4차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개최('04. 2. 12)
16. 5차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개최('04. 3. 15)

지원체제



**지
원
기
관**

- * 산업자원부
- * 농림부
- * 해양수산부
- * 특허청
- * 중소기업청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기술표준원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한국기술거래소
- * 한국디자인진흥원
- * 한국발명진흥회(관리기관)

2004년도 협의회 지원계획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22

한국발명진흥회

- 산업자원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
- 특허청
- 중소기업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기술표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한국기술거래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발명진흥회

자금지원계획 (총 1,831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기관 (지원기관)
신 제 품 개 발 자 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230 용자	특허보유기업의 기술실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발명진흥회)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	20 용자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자금부족 기업에게 시제품개발 용자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145 출연	특허출원 후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80 출연	기술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60 출연	특허기술에 기초하고 1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청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18 출연	대학,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11.1 보조	특허거래 및 양산 전에 시장반응 조사를 위한 시작품 제작을 지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소 계		564.1		

구분	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사업기관 (지원기관)	협의회 소개
창업 자금	신기술창업보육(TBI)자금	100 출연	신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1억원 이내에서 지원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벤처창업자금	650 용자	창업 및 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	중소기업청 (중진공, 기보)	
	소 계	750			
양산 및 시설 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350 용자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 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 상품화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투자조합	20 출자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는 잠재력 있는 특허기업 발굴	특허청	
	소 계	370			
특허평가 및 거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대학보유기술이전사업 우수기술수출지원사업 	30 출연	특허거래, 기술투자, 현물출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 및 사업성 높은 기술의 국내외 이전	산업자원부 (한국기술거래소)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15 용자	특허박람회 개최, 특허 이천후 사업화 비용 지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지원	15.8 보조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비용 지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상설장터 시뮬레이션제작지원	5.3 보조	특허기술 거래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제작지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소 계	66.1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38 출연	농림업 관련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농림부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신규 기술개발자금	7 출연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창업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10 출연	산·학·연의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자금 지원	농촌진흥청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2 출연	임업분야 신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실용화연구 지원	산림청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15 용자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화 비용 용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5 보조	개인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의 해외출원 비용 보조		
산업재산권진단사업	3.4 보조	출원 전 연구개발 단계의 사전 종합진단실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소 계	80.4			

간접지원계획

1. 특허정보제공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특허기술정보조사분석 (patent map) 보급	특허기술정보 조사분석 보고서의 보급을 통해 연구 개발방향 제시등 특허기술 개발전략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2. 권리화지원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출원료 등 감면(개인 및 소기업 70%, 중소기업 50%)	한국발명진흥회

3.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전문인력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 교육 특허기술사업화, 특허기술마케팅, 특허기술가치 평가, 특허분쟁사례연구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전문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거래·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해외 선진 기술거래·사업화 기법의 국내 유입, 전파 	한국기술거래소

4. 기술·경영지도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중소 제조업체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지도 실시 및 지도수당의 70% 국비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지도 (총비용의 40% 수준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경영지도	내·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한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지도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
디자인컨설팅사업	중소기업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상품 개발을 촉진기 위해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국가이미지 개선 (참여기업 부담금 40%, 정부지원금 60%)	한국디자인진흥원

5. 기술인증·보증지원

협의회 소개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기술우대보증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우수판정」기업은 기술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 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검토하는 등 우대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 심사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해 one-stop 보증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신기술인증(NT, EM 등) 지원사업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해서 신기술 마크를 부여	기술표준원
기계공제조합 하자보증우대지원	신기술인증 취득 후 하자보증 등 이행보증 발급 필요시 민간보증기관에 비해 30~50% 저렴하게 발급지원	기술표준원

6. 기술평가·거래지원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발명의 기술가치평가	발명의 사업화 및 이전확산을 위한 기술의 사업성 및 기술가치평가 수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가치평가	산업재산권등 기술에 대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 -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 기술이전 거래, M&A 등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평가 • 해외인 출자 산업재산권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기반구축	• 기술 가치평가 실무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선진국의 다양한 평가기법 소개 및 실무적용방안 제시 • 기술경쟁력 지수 개발을 통한 기술기업 등급평가 • 핵심 시장정보 DB 구축 등	한국기술거래소
IP-Mart (인터넷특허기술장터)	Cyber상에서 특허기술의 거래 지원(무료) ※ www.patentmart.or.kr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정보DB구축	• 국내외 이전 희망 기술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급의 DB로 구축 및 유통 •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기술등록, 검색,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기술거래소
지역기술이전거점구축	기술이전활성화 역할이 가능한 기술이전센터를 지역에 설치, 보육 ※ '03년 설치현황 : 경기, 경북, 부산, 충남 기술이전센터('04년 4개 지역 추가 설치예정)	한국기술거래소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평가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가능 기술정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국내·해외 소개 • 개별 이용자 편의의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지원 정보 제공(daily & monthly 웹진) •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전문가와의 상담 등 커뮤니티 기능 제공 • 기술거래 및 사업화 알선, 기술평가 지원 • 기업거래, M&A 및 컨설팅 지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7.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지원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기관
우수특허제품 e-마켓플레이스구축사업	국내 중소 벤처기업 등의 우수 특허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및 유통촉진을 위한 특허제품 전용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국발명진흥회
국제발명품전시회 출품지원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진열대 사용료, 카다록 게재료, 번역료, 통역료 등 출품비에 대하여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우선구매추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이전설명회	상설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주1회 개최) ※ 정보통신, 생명화학, 기계소재 등 매주 기술분야 별 설명회 개최 및 현장 상담추진	한국기술거래소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인증제품을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토록 요청하여 판로개척을 지원	기술표준원

종합상담

협의회 소개

1. 전화 : 02-3459-2846~2850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4. 관련 홈페이지 : www.kipa.org → 2004년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지원사업 공고 → 해당 지원사업

kipa. 본회소개 | 사업안내 | 사이버전시관 | 발명매거진 | 발명교실/사례 | 회원전용 | 지식재산경영사 | 관련사이트

한국발명진흥회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사업안내

- 발명진흥/전시
- 학생발명
- 교육/연수
- 특허정보지원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특허기술링가실

2004년 21C Global Multiversity
사이버국제 특허아카데미 리뉴얼
지식재산권 교육안내 및 신청

2004년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지원사업

NOTICE (공지사항)

- 2004년 업종별 실무위원회 개최
- 우리회 홈페이지 개발 용역사업 입찰공고
- 우리회 전산장비 구매 입찰공고
-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5/12~14) 안내**
- 제17회 대한민국의학발명전시회 접수결과
-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 발명의 달 기념 <2004전국발명포여공모대회> 안내
- **제8회 지재포럼 「일본지재경쟁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004년 국제출원비용유자사업 안내**

WHAT'S NEW [전체보기]

- [대학산업기술지원 현장] 첨단 신발 특허 300여건 보유
- 명약구분 가능...의약품 개발

RELATED LINKS

- Community ---
- 바로가기 ----
- 사이버 국제 특허아카데미
- 특허지도 Patent Map Patent Map >>
- Seoul International Invention Fair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 ipMART 특허기술장터 >>
- 특허넷 KIPONET 온라인 전자출원
- 학생발명전시회 및 교원발명전 수상작 모음

자금지원



1. 신제품개발자금
2. 창업자금
3. 양산 및 시설자금
4. 특허평가 및 거래자금
5. 연구개발 및 권리화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특허과제

산업발전법 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주요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의 국산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1,200억원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80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300억원
- 신기술보급사업 : 100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230억원

※ 총 1,200억원의 예산중 특허과제 지원을 위한 230억원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용하고, 일반과제 지원을 위한 970억원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용함

3. 자금성격 : 융자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

※ 우대지원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수행업체

2.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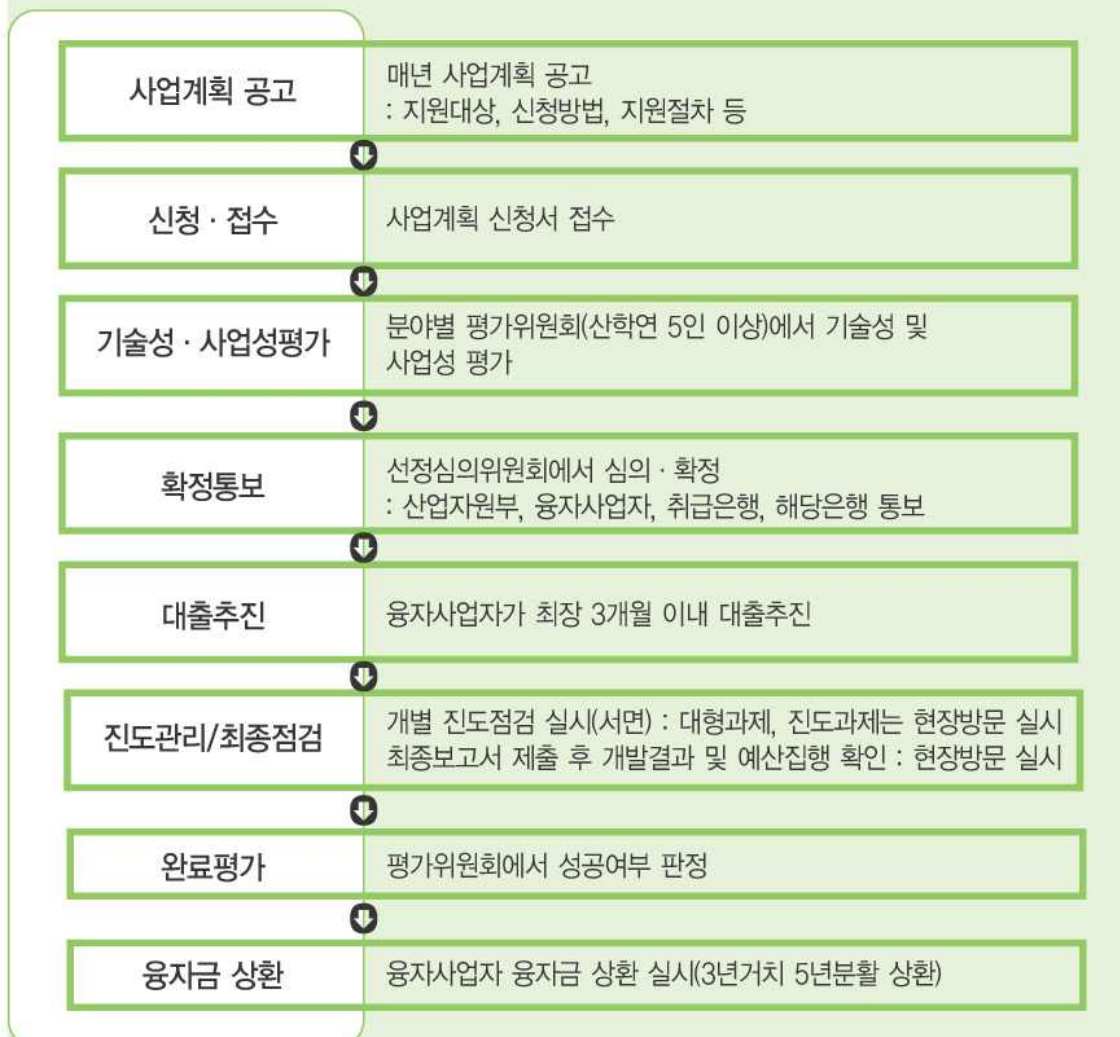
- 자본재시제품,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중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부문과 신기술보급사업 중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부문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부문

지원내용

용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용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담보·보증서부 대출	4.63%(변동금리)	8년(거치기간 3년)	소요자금의 80%	50억원 이내

지원절차



1.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1개월 연장 가능함)
2.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3. 융자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류

1. 2004년 융자금신청서
 2. 2004년 융자금신청서(추가작성)
 3. 2004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4. 2004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시행세칙
-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NOTICE(공지사항) → 해당 지원사업

■ 접수기간

- (3차) 4월 6일 ~ 4월 16일(자금 소진시까지)
- ※ 차수별 접수기간 공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6~9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산업기술개발자금 중 디자인과제

산업발전법 제25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산업자원부고시)에 의거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1,200억원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800억원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300억원
- 신기술보급사업 : 100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20억원

※ 총 800억원의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예산중 디자인 분야의 특허과제 지원을 위한 20억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용하고, 나머지 780억원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용함

3. 자금성격 : 융자자금

자금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산업디자인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디자인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 상기 신청대상 사업자는 개발품목의 디자인 개발중 최종 렌더링을 완료하여야 한다.

※ 우대지원

-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과제(10점)
- 우수 산업디자인(GD) 상품 선정업체(10점)
- 관련요령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중소기업, 전년도 연구비 투자비

율이 총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10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10점)
- 상기 외의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 계획상 우선 지원대상 과제(5점)

2.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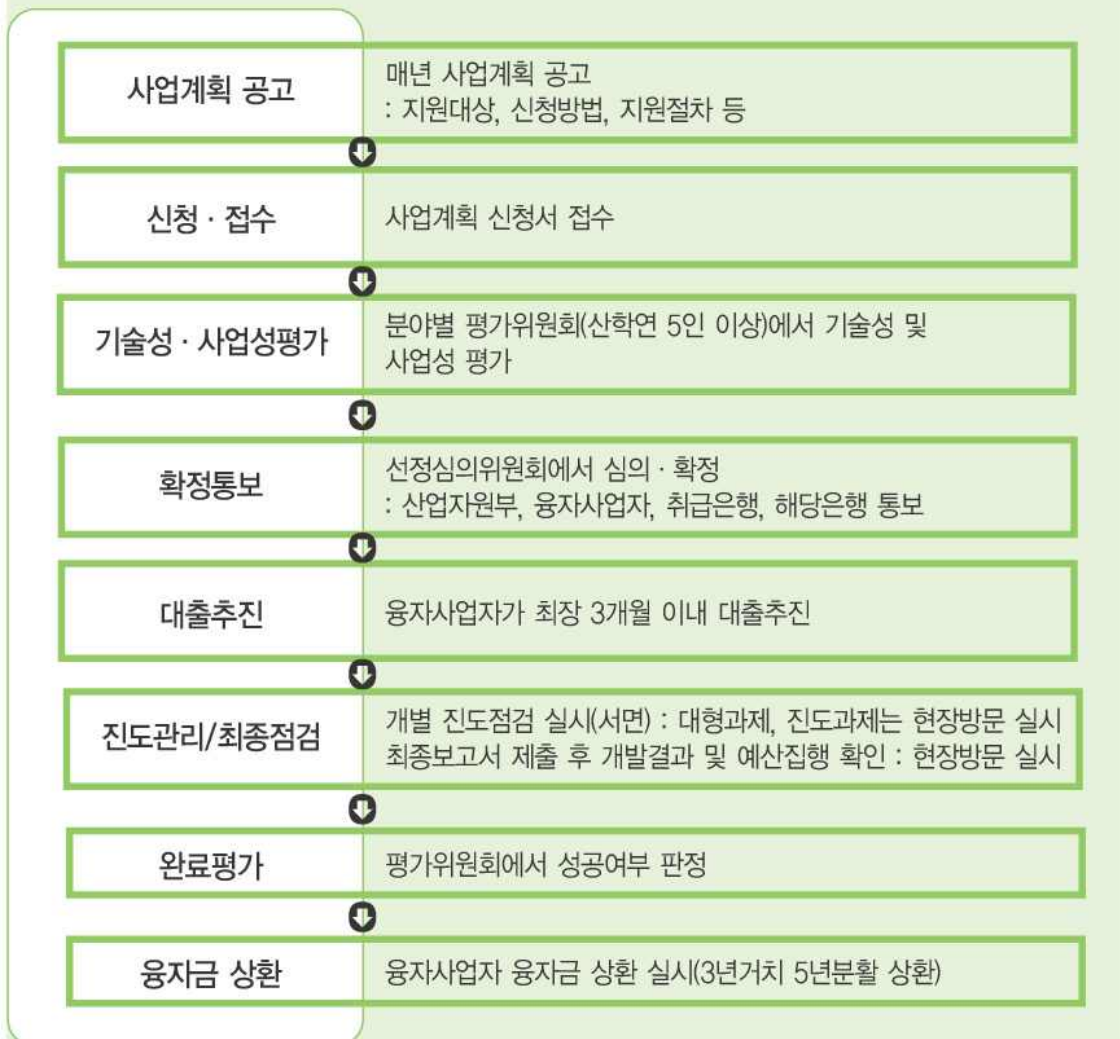
-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중 산업디자인 개발부문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의 특허기술 실용화부문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담보·보증서부 대출	4.63%(변동금리)	8년(거치기간 3년)	소요자금의 80%	50억원 이내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매년 사업계획 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신청·접수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기술성·사업성평가	분야별 평가위원회(산학연 5인 이상)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확정통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산업자원부,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해당은행 통보
대출추진	융자사업자가 최장 3개월 이내 대출추진
진도관리/최종점검	개별 진도점검 실시(서면) : 대형과제, 진도과제는 현장방문 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후 개발결과 및 예산집행 확인 : 현장방문 실시
완료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성공여부 판정
융자금 상환	융자사업자 융자금 상환 실시(3년거치 5년분할 상환)

1.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1개월 연장 가능함)
2.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3. 융자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류

1. 2004년 융자금신청서
 2. 2004년 융자금신청서(추가작성)
 3. 2004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4. 2004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시행세칙
-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 → 지원사업 → 해당 지원사업

■ 접수기간

- 1차 : 3월 26일(금) (자금 소진시까지)
- ※ 차수별 접수기간 공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31-780-2094
2. 팩스 : 031-780-2093
3. 주소 : (우)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4. 홈페이지 : www.designdb.com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중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 또는 혁신적인 신기술의 실용화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3,17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4 예산
산업기술개발사업	6,010
① 산업혁신기술개발	3,170
- 성장동력기술개발	550
- 중기거점기술개발	720
- 차세대신기술개발	570
- 공통핵심기술개발	420
- 신기술실용화	145
- 핵심기반기술개발	650
- 표준화기술개발	70
- 기획평가관리	45
② 부품소재기술개발	1,528
③ 지역특화기술개발*	418
④ 항공우주기술개발	169
⑤ 민군겸용기술개발	68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145억원

※ 산업혁신기술개발자금 총 3,170억원 중 특허기술 또는 연구소 등이 보유한 혁신적 신기술의 실용화,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실용화 사업에 145억원을 배정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운용함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해 신청기업이 평가에 참여하여 최적의 대학 및 연구소 선정

2. 지원분야 : 기업대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산업체 중심의 개발과제 지원

지원내용

1.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개발비의 80% 이내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 기술료 비징수입

지원절차

사업공고	산업자원부 - 경제지/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RFP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자원부 - 지원대상과제 산자부 보고 - 산업자원부가 검토후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일괄협약 - 민간부담금 입금후 지원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보고서 제출 - 현장실사 또는 평가위원회평가 - 사업비는 사용내역만 보고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일괄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현장실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비는 최종년도 1회만 정산
사후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 개발종료후 3년간 활용보고

자금 지원

■ 신청서류

1. 사업계획서 10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4. 공장등록증 사본(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1부
 5. 벤처기업 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1부
 6.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선정업체인 경우) 사본1부
-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주요사업안내 →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 신청양식
- ※ 인터넷 접수

■ 추진일정

1. 2004. 3 : 수요조사 실시
2. 2004. 4 : 공고대상과제 선정
3. 2004. 5 : 과제공고
4. 2004. 6 : 사업계획서 접수
5. 2004. 7 : 평가
6. 2004. 8 : 협약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지원실

1. 전화 : 02-6009-8101~7
2. 팩스 : 02-6009-8109
3. 주소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4. 홈페이지 : www.itep.re.kr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브랜드네이밍 포함), 포장디자인, 캐릭터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전년도 수준(2003년 : 127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80억원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특허기술에 기초한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최근 3년간 선정된 Top디자인 전문회사

- 농·수·축산, 임업 생산사업자

※ 우대지원

-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산자부 인증서 발급업체)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출기업
- 조달청이 조달물품의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추천하는 상품 생산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기업(최근 3년 이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2.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브랜드네이밍 포함), 포장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자금 지원

지원내용

1.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개발비의 66% 이내	개발사업비의 2/3 이내, 1억원 이내	1년 이내

※ 2개분야 이상의 통합지원시 총 지원한도는 지원금액이 많은 분야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지원절차



1. 개발과제가 성공으로 평가시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는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등은 40%를 기술료로 징수함(성공평가란 디자인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말함)
2. 기술료 징수방법 : 현금 또는 은행도약속어음
3.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이외의 기업은 대기업으로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참고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 → 해당 지원사업

■ 접수기간 : 기간별로 일정금액 공시후 접수, 2004. 12. 31까지

■ 접수 및 문의처

1. 본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팀
 - 전화 : 031-780-2089~2094 - 팩스 : 031-780-2093
 - 주소 : (우)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 홈페이지 : www.designdb.com
2. 중부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중부지원
 - 전화 : 042-864-2632/4 - 팩스 : 042-864-2635
 - 주소 : (우)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03호
3. 영남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영남지원
 - 전화 : 051-740-7479/80 - 팩스 : 051-740-7481
 - 주소 : (우)612-8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291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사무동 3층
4. 호남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호남지원
 - 전화 : 062-953-0963 - 팩스 : 062-953-0964
 - 주소 : (우)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청동 621-15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12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로 1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의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1,189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60억원

※ 전체 지원예산 총 1,189억원은 일반과제와 전략과제로 구분 지원되며, 전략과제 지원예산중 유망특허기술의 개발지원을 위해 60억원을 배정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용함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32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

2. 지원대상과제

- 특허·실용(등록·출원포함) 기술중 유망특허기술개발과제(IPC 166과제)
- 유망 특허과제 기술수요조사(43과제)

지원내용

1.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1억원 이내, S/W분야는 5천만원 이내	1년 이내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30%(기술료)를 성공 판정일로부터 5년간 균등 분할 납부

지원절차



1.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이상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시에는 1개 과제를 선정함.
2004년도 일반과제 선정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2003년도 수행업체는 참여 가능(단, 4회이상 지원업체는 참여불가)
2. 지원대상과제를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 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하여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기타 참고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Notice)공지 사항 → 해당 지원사업

■ 접수기간

4월 별도공고 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7~50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실용화,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59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18억원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으로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등록증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주관기업이 될 수 있음

-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정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영위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특허(또는 실용신안)기술일 경우, 이전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당초발명자(또는 고안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과제를 용역(또는 위탁)의뢰로 그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소유한 경우
- 기술지도나 용역계약, 컨설팅계약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업협동형전략기술개발사업,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자금 지원

- 신청과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있거나,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2. 지원대상기술 : 사업화되지 않은 다음 기술로서

-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 해외 도입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인정된 기술
-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체결된 기술. 단, 기술보유자가 개인 등의 경우 소속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 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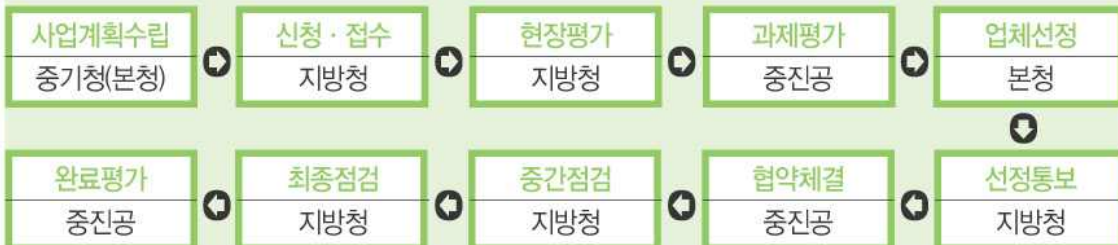
지원내용

1.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전체개발비의 75%	1억원 이내, S/W분야는 5천만원 이내	1년 이내

- ※ 당해연도 사업참여는 기업당 1과제, 전년도 지원업체는 개발완료후 지원가능
-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1년거치 3년분할 상환. 단, 일시납부시는 납부액의 20% 감면)

지원절차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기타 참고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이전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자금지원 → 중소기업이전 기술개발사업

■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지방 소재기업

- 접수기간 : 2004. 2. 23(월)~3. 6(토)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9개 지방청) :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기술지원과(붙임)

2. 수도권 소재기업

- 접수기간 : 2004. 4. 6(화)~ 4. 17(토)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3개 지방청) : 서울, 경기, 인천 기술지원과(붙임)

■ 문의처

1. 12개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전화 : 042-481-4444
- 팩스 : 042-472-3289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홈페이지 : www.smba.go.kr

3.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진흥실

- 전화 : 02-769-6802/5
- 팩스 : 02-769-6807
- 주소 : (우)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홈페이지 : www.sbc.or.kr

지방소재기업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부 서	주 소	전화번호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616-110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Tel 051)601-5137 Fax 051)335-4335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704-340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1-18	Tel 053)659-2227 Fax 053)654-1714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200	Tel 062)360-9134 Fax 062)366-9662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200-944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Tel 033)260-1631 Fax 033)260-1639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361-27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Tel 043)230-5332 Fax 043)235-2493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561-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Tel 063)210-6441 Fax 063)210-6449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Tel 055)268-2554 Fax 055)262-5074
제주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690-130 제주시 월평동 299-1	Tel 064)723-2103 Fax 064)723-2107
대전 충남 사무소	기술지원팀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Tel 042)865-6135 Fax 042)865-6139

수도권소재기업 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부 서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Tel 02)509-7016 Fax 02)504-6548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441-3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Tel 031)201-6953 Fax 031)201-6959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우)405-300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Tel 032)450-1153 Fax 032)818-8339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발명의욕 고취와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11.1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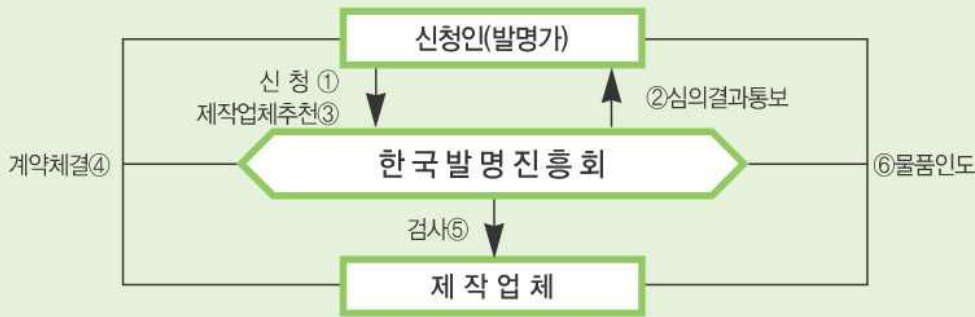
1. 지원대상자
 - 내국인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시작품보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대상기술
 - 특허법 또는 실용실안법의 심사청구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된 발명 고안으로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 고안

자금 지원

지원내용

1.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내 무상지원
 2.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무상지원
 3.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무상지원
- ※ 제작비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3,000만원임(2003년 기준)

지원절차



1. 심의기준 : 발명의 사업화 가능성, 수출의 유망성,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 발전의 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 평가기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고안, 산업재산권진단 지원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발명 고안, 중소기업청의 각종 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한 기술중 우수 기술 공동 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 고안,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고안, 여성발명가가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2. 시작품 제작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검사 후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제작업체에 지급 (발명자에게는 제품 및 금형등을 인도함)

3. 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시작품 제작비중 본인부담금을 규정에 의해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닐 때
- 시작품 제작에 관한 협조 및 사전협의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태만히 한 때
- 시작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발명(고안)을 진흥회장과 사전협의 없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작완료전에 그 권리가 소멸된 때
- 기타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신청서류 : 2004년도 신청서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NOTICE (공지사항) → 해당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04년 1월 2일~1월 30일 까지 (매년 1월 접수마감)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4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자금 지원

2 창업자금

신기술창업보육(TBI)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100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100억원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보유자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대학(원) 교수, 학생, 연구원, 전문기술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2. 지원분야 :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 무이자	1인당 1억원 이내, S/W분야는 5천만원 이내	1년 이내

※ “성공” 판정시 정부지원금의 50%를 정액기술료로 5년 이내 분할 납부

지원절차

사업공고		산업자원부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심의대상자 추천	NO → 통보	대학, 연구소 등 지원기관
↓ YES		
전문위원회 심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실무작업반운영	
운영위원회 심의		산업자원부
↓		
결과통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신청서류

1. 신기술사업화 계획서 10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사업자)
4. 공증된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주요사업안내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신청양식

자금 지원

접수기간

4월 별도공고 예정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1. 전화 : 02-6009-8184
2. 팩스 : 02-6009-8189
3. 주소 : (우)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4. 홈페이지 : www.itep.re.kr

중소·벤처창업자금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창업 및 신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3,000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65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400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250억원)

※ 전체 지원예산 총 3,000억원 중 650억원을 우수 특허기술의 창업지원을 위해 배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4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50억원을 분담하여 운용함
3. 자금성격 : 융자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실용신안 보유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첨부 : 중소기업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지원제외대상 업종>
- 신용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지원내용

1.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2. 용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액
담보·보증서부 대출	5.9%(변동금리)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업체당 연간 10억원,
신용대출	6.4%(변동금리)	운전자금 : 3년(거치기간 1년) 시설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5억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1. 자금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최근 년도 재무제표 각 1부(세무서 제출분, 해당업체에 한함)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주주명부(해당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금융거래 확인서(거래금융기관 모두 제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신청시설에 대한 견적서(계약서)와 카탈로그(설치도면) 1부
9. 회사약도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자금지원
→ 중소·벤처창업자금

■ 접수기간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처

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전화 : 02-789-9309
- 팩스 : 02-789-9484
- 주소 :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6층
- 홈페이지 : www.kibo.co.kr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지역
 - 전화 : 02-769-6603~8
 - 팩스 : 02-769-6858
 - 주소 : (우)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 홈페이지 : www.sbc.or.kr
 - 경기지역
 - 전화 : 031-259-7923~7
 - 팩스 : 031-259-7901
 - 주소 : (우)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111-8
 -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 인천지역
 - 전화 : 032-450-0523
 - 팩스 : 032-442-3236
 - 주소 : (우)405-71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16층
- ※ 지역본(지)부 조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자금지원
→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지원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금융 및	전업종	전업종
	55112	여관업	보험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부 동 산 업	70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70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91	회사및단체 기숙사 운영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55199	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70122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55211	한음식점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55212	중국 음식점업		70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3	일본 음식점업		70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214	서양 음식점업		70221	부동산 중개업
	55215	기관 구내 식당업		70222	부동산 감정업
	55219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3111	이용업
	55221	피자, 햄버거및치킨 전문점		93112	미용업
	55222	분식및김밥 전문점		93121	육탕업
	55223	이동 음식점업		93122	마사지업
	5522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3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93912	가정용 세탁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93913	세탁물 공급업
	55233	간이 주점업		93921	장례식장 및 장의점
55241	제과점업	93922		묘지 및 화장업	
55242	찻집	93991		예식장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93992	점술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93993	개인간병인및 유사서비스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9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88991	무도장 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자금 지원

3

양산 및 시설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 지원규모 및 성격

1. 전체 지원규모 : 750억원
2. 특허과제 지원규모 : 350억원
3. 자금성격 : 융자자금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확정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 받은 특허출원중인 기술 포함)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과 Inno-Biz 업체는 우대)
 - 최근 3년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중소기업청 Inno-Biz선정업체 보유기술

※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에 있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제품 양산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않은 업체 (다만 외주가공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제외)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다만 업력 3년 미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액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서부대출	4.9% (변동금리)	5년 (거치기간 2년)	업체당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자금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예비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지원결정	자금선정위원회
↓	
자금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사후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신청서류

자금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지원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성공판정공문, 특허등록원부 등을 필히 첨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필)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접수기간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 화
서울	02) 769-6601/8	충 북	043) 230-6811/3
부 산	051) 630-7430/6	경 남	055) 269-5820/5
(녹산출장소)	051) 831-0687/8	전 북	063) 210-9911/4
대구경북	053) 601-5281/4	울 산	052) 277-3283
경 기	031) 259-7922/7	(연암출장소)	052) 288-3921/3
인 천	032) 450-0520/4	강 원	033) 256-9611/3
광주전남	062) 600-3016/9	강 령	033) 646-9967/8
대전충남	042) 866-0114	제 주	064)751-2055/7
(아산출장소)	041) 531-7493	경기북부	031) 920-6721/5

특허투자조합

민관합동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고 투자금을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하여,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20억원
2. 자금성격 : 투자자금

사업내용

1. 사업 목적
 -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투자조합을 구성하고, 전문투자회사가 운용토록 함
 - 시장원칙에 따른 지원으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중 여유자금의 건전한 활용을 유도
2. 사업 근거 :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발명진흥법 제5조
3. 사업내용(투자조합 1호)
 - 출자금 구성 : 총 100억(특허청 20억, 산업은행 30억, 기보캐피탈 50억)
 - 조합의 존속기간 : 조합의 설립일로부터 5년, 2년이내 연장 가능
 - 투자대상 : 등록 또는 출원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는 창업후 7년미만의 중소·벤처기업
 - 투자방법 : 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
 - 투자시기 : 조합결성 후 1차년도에 출자금 총액의 40%, 2차년도에 40% 3차년도에 20% 이상 투자
 - 배분원칙
 - 출자원금 : 조합해산시 배분
 - 투자수익 : 매년 결산 후 조합원 총회의 승인에 따라 배분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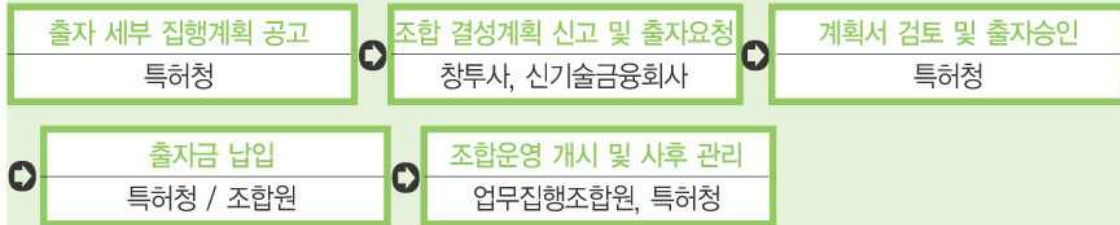
4. 손실금 부담

-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0%를 우선 부담
- 잔여손실금은 특별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5%를 우선 부담
- 추가 잔여손실금은 조합원별 잔여출자비율에 따라 부담

5.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

- 관리보수 : 매 회계연도 투자금액의 2.5% 및 미투자자산평균잔액의 0.5%
- 성공보수 : 조합기간(5년) 중 총수익률이 8%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20%(최종결산기에 지급)

6. 운영절차



7. 투자실적

- 투자총액 : 3,900백만원('03. 12월)
- 투자기업
 - '03. 7. 30 현대네트웍스(주), 1,000백만원 투자
 - '03. 8. 21 (주)웍스, 500백만원 투자
 - '03. 9. 4 (주)화인에이티씨, 1,200백만원 투자
 - '03. 9. 29 (주)백산오엠비, 200백만원 투자
 - '03. 12. 17 (주)이너텍, 1,000백만원 투자

8. 향후 추진계획

2003년 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BT, NT 등 전문 기술분야 투자조합 결성 추진

접수 및 문의처 : 기보캐피탈 투자팀

1. 전화 : 02-3451-9212, 9230
2. 팩스 : 02-3452-9804
3. 주소 : (우)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1
4. 홈페이지 : www.ktac.co.kr

4

특허평가 및 거래자금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발명의 평가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공인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15.8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 지원대상

발명의 평가신청자는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특허권자,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및 중소기업자,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으로 하며, 평가수수료 지원대상기술은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함

■ 지원내용

평가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의 80% 범위내에서 신청인당 연간 4건 이내와 3천만원 이내의 한도로 지원

- ※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거나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기관 또는 같은 기관에서 중복 평가를 받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개기관의 평가수수료만 지원

자금 지원

지원절차

평가상담	신청인(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성, 사업성 평가기관(평가비용 견적 및 평가기간 산출)
사전심의 신청	신청인(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의위원회 (지원여부 예비결정)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결과통보 : 신청인 및 해당 평가기관
평가계약, 진행 및 완료	신청인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평가기관 : 평가착수, 진행 및 완료
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신청인(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지급 결정)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신청인 : 평가수수료 지급
사후관리	주관기관 : 수혜자 대상 평가결과 활용실적 설문조사

1. 특허청은 평가수행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운영
2. 평가신청인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상담을 하고,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 (사전심의)신청을 주관기관에 하며, 예비결정 통보를 받은 후 평가기관과 평가계약을 체결, 계약에 의거 평가수수료를 납부(평가금액 및 기간은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발명의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가 완료되면 발명의 평가기관은 신청인(발명가)에게 평가결과를 회보
4. 평가완료 후 평가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관기관에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

평가결과의 활용

1.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서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 과연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음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실시알선시(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수 있음
3. 중소기업자로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

술우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25조(시작품 제작지원)에 의해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 위한 선정심의시 가점부여를 받을 수 있음
5.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1.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신청서
2.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 각 발명의 평가기관별 신청양식을 사용 <첨부 : 발명의 평가기관 리스트>

■ 접수기간

연중수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1. 전화 : 02-3459-2884~6
2. 팩스 : 02-3459-289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사업안내/특허기술평가팀 참조

자금 지원

발명의 평가기관 리스트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041-5898-402/496] 마케팅,특허팀 김범용 팀장 박정훈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설비개발부문 : 냉동공조, 에너지설비, 산업기계, 산업재료, 화학, 환경, 화학공정기술 - 생산시스템 개발부문 : 기계설계 및 정밀가공, 정밀 및 특수가공, 컴퓨터응용엔지니어링, 시스템제어, 설계자동화, 로봇, 센서 - 생산기반기술부문 : 주물기술, 경량금속, 용접자동화, 표면기술, 소성가공, 특수가공, 주물공정, 주물분석, 금형기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T.02-2635-6100(교)740] 연구개발지원센터 권용한 팀장 강경준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분야 : 무기재료, 유기재료, 제조방법, 광물 등 - 금속분야 : 철강, 비철, 제조방법, 비파괴 등 - 기계분야 : 일반기계, 산업기계, 농업기계, 식품기계, 공작기계, 공구, 수송기계, 선박기계 등 - 환경분야 :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 토건분야 : 건축자재, 토목자재, 시공방법 등 - 의료분야 : 의료용구, 의약, 치과재료, 의료용 기기 등 - 생명산업분야 : 안전성 독성, 미생물 - 요업분야 : 요업재료, 유리, 내화물, 연마재, 도자기 등 - 식품분야 : 식품 및 첨가물, 포장용기, 미생물 및 효소 등 - 정밀화학분야 : 촉매, 농약, 천연물제제, 피혁, 제지 등 - 생활용품분야 : 가정용품, 사무용품, 운동용품, 의류, 완구 등
KT&G중앙연구원 [T.042-866-5639] 전산정보실 박선민	담배 및 홍삼의 제조 및 재배
한국해양연구원 [T.031-400-6087] 연구개발팀 김보연 [T.042-866-7656] 사업관리팀 양준혁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해양공학, 해양과학관련측정장비, 선박추진기, 해양플랜트, 해양정보통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T.031-428-7517] 의뢰시험팀 이용균 과장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부품
한국원자력연구소 [T.042-868-8175] 연구관리실 한면석	핵원자로기술, 핵연료주기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레이저개발 및 응용, 원자력신소재 개발, 원자력시설의 응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T.042-860-3776] 연구관리과 정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 관련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기술 - 화석에너지 활용 및 청정화 기술 - 에너지이용화 합리화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형식승인 분야
한국지질자원연구소 [T.042-868-3861] 연구관리과 손문정	지질, 광상, 자원탐사, 석유, 해저조사 및 탐사, 자원개발, 광물활용 및 소재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한국화학연구원 [T.042-860-7762] 기술마케팅실 박인영	의약, 농약, 고분자소재, 무기소재, 촉매,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한국전기연구원 [T.055-280-1162] 기술정보실 김응호 선임연구원	전력제품, 전력전자, 전력기기, 전기재료 등
산업기술시험원 [T.02-860-1301] 사업개발팀 김학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 : 반도체, 전자부품,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중전기, 계측제어 - 기계분야 : 기계설비, 정밀가공, 산업기계, 공작기계, 자동화, 냉동공조, 에너지설비, 방폭, 비파괴, 소음진동 - 재료분야 : 세라믹, 고분자재료, 비철금속, 표면기술 - 환경기술 : 대기, 수질, 폐기물소각, 환경설비, 화학, 다이옥신 - 기타 : 생산기반기술, 생활용품, 의료기기, 계측기기, 광응용기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T.02-856-5615, (교)221] 기술본부 무기분석팀 하승식 차장	가정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신변잡화, 완구용품, 가구용품, 신변세화, 레저용품 등 관련 소재 부품
한국식품개발연구원 [T.031-780-9172] 식품산업지원연구본부 장대자	농축수산물 이용 가공기술, 식품의 저장, 유통관련기술, 식품소재 개발기술, 식품의 기능성, 물성관련기술, 미생물 및 효소이용기술, 식품포장기술, 식품기계 관련 기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T.02-3415-8779] 시험연구팀 남궁 연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에 대한 각종 물리, 화학 및 성능평가 - 건자재관련 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평가 - 원적외선의 원부자재 및 응용제품 특성평가 - 건자재 원부자재관련 특성평가 - 토목·건축구조물의 기초기반 및 안정성 평가 - 건자재 제조공정 기술평가 - 산업슬러지 및 건축폐기물 활용 기술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T.02-789-9472] 평가사업본부 장재혁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기술을 제외한 전범위 - 발명의 사업성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T.02-6009-8103] 평가기획실 배도영 선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재료, 비철금속, 주조, 소성가공, 열/표면처리, 용접, 금형, 섬유/식품/농기계, 공작기계, 자동화, 냉동공조, 환경설비, 건설중장비, 광응용기기, 자동차, 조선 및 조선기자재, 항공/우주, 의료기기, 계측기기, 반도체, 전자부품 및 재료, 영상기기, 음향기기, 전자제품, 중전기,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S/W 및 전자게임, 멀티미디어, 기초화학, 화학제품, 제지, 정밀화학, 생물산업, 요업재료, 인조섬유, 천연섬유, 직물/염색가공, 섬유제품, 신발/피혁, 생활용품, 전통고유기술(칠기, 도자기, 한지, 전통섬유, 천연염색 등) - 발명의 사업성 평가

자금 지원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T. 02-958-6108] 기술사업단 박종복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고분자, 세라믹 재료 및 부품 : 재료의 공정기술, 신기능 재료합성, 재료 및 소자의 신뢰성 - 컴퓨터H/W 및 주변기기 기술부문 : 컴퓨터본체, 주변기기H/W 및 S/W기술 - 컴퓨터S/W 및 응용기술 : 가상현실, 특수영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 제어계측 및 자동화 : 전력전자·전기기기, 로봇제어/시각시스템 - 기계요소 신뢰성평가 - 메카트로닉스 분야 : CAD/CAM기술, 측정기술, Rapid Prototyping 기술, 설계자동화 - 생산시스템 : 공장자동화관련S/W기술, Internet응용 Engineering기술, 환경친화 설계 및 제조기술 - 화학공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정밀화학, 무기화학분야 · 부산물 발생 및 처리의 효율성 평가 · 환경친화성, 환경영양 에너지효율평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T. 02-958-6108] 기술사업단 박종복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설비 및 오염방지 기술 : 대기, 수질, 폐기물 소각기술 - 환경 Monitoring 측정기기 분야 : TMS, 자동측정기 - 지구온난화가스 저감기술분야 - 환경안전기술 진단분야 : 폭발, 위해성, 환경호르몬 - 생체의료 기능, 소재 및 의료기기 : 인공장기 소재, 분리막 소재 및 시스템, 재활공학 - 생체촉매, 인공촉매, 신규 정밀화학제품(의약, 농약)제조공정 생물자원, 유전자 기술, 환경유해물질 관리, 의약품 및 화학물질(농약 등)안전성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T.02-3299-6054] 기술이전평가실 유선희 책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요업기술원 [T.02-3282-2486] 기술응용확산센터 김인섭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소재부문 : 구조재료, 광학재료, 탄소재료, 생체재료, 원적외선, 나노소재, 분체재료, 단결정등과 관련된 제조기술, 소재, 제품, 장치 및 특성 평가 - 전자재료부문 : 압전재료, 반도체재료, 유전재료, 전도성재료, 자성재료등과 관련된 제조기술, 소재, 제품 및 특성평가 - 요업부문 :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도자기, 점토벽돌, 연마제, 법랑 등과 관련된 제조기술, 소재, 제품 및 특성평가 - 건축자재부문 : 건자재관련 무기소재 및 제품, 건자재관련 제조공정, 건자재관련 폐기물활용기술 - 광물부문 : 광물활용 및 소재, 광물분석 - 환경부문 : 대기, 수질관련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T.02-3299-8040] 검사기술부 임인재 부장	섬유제품, 섬유관련 산업자재, 토목섬유, 원사, 직/편직, 염색, 가공, 봉제의 제조기술, 미생물에 의한 항균성, 염료, 조제 및 가공제의 환경성, 유해성, 방염성(난연성)

평가기관	평가기술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T.031-910-0365] 건축연구부 이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분야 : 구조시스템, 구조안전, 구조재료, 도로시설, 첨단도로시스템, 토공구조물 및 사면, 지하구조물, 구조물 기초 및 지반환경 - 수자원환경분야 : 수자원, 하천, 해안항만, 건설환경, 수환경 - 건축분야 : 건축구조 재료, 건설설비도시설비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T.02-2056-4731] 유화시험팀 이수민 팀장	윤활제류, 방수제류, 부동제류, 해양오염방지분야, 송풍기, 계량, 계측분야, 헬스기구, 유체기계류, 세정제류, 왁스류, 제지류, 유기, 무기소재, 레이저토너카트리지 및 잉크, 향균, 독성, 미생물분야, 기타 Q 및 GQ마크 소관품목
한국기술거래소 [T.02-6009-4303] 기술거래본부 가치평가실 황정원 전문위원	발명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자동차부품연구원 [T.041-559-3048] 연구개발팀 이기영 선임연구원	발명의 기술성 평가
한국산업은행 [T.02-787-6742] 산업기술부 문대근 차장	발명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T.042-860-5621] 기술평가팀 정하재 책임연구원	발명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T.02-2194-7350] 기술평가이전팀 정다운 연구원	발명의 기술성 평가,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T.02-769-6994] 지도지원팀 이꽃님 대리	발명의 사업성 평가
한국발명진흥회 [T.02-3459-2884] 특허기술평가팀 윤종철 과장	발명의 사업성 평가

자금 지원

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정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은 국내기업 및 개인에게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0.55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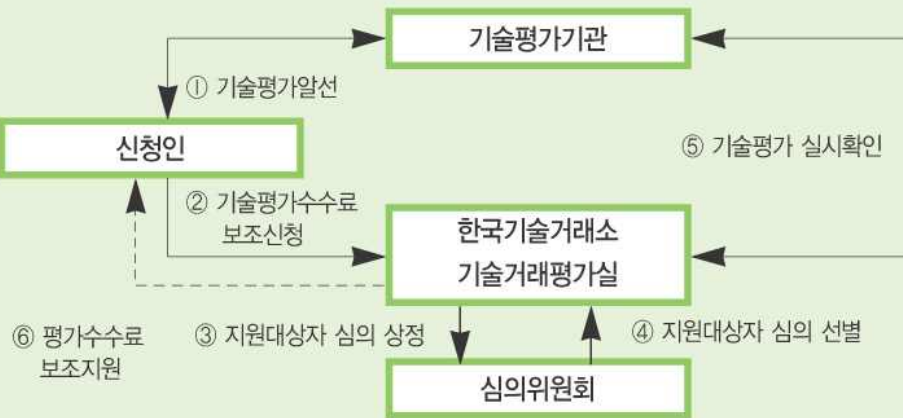
신청자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사후지원

- 정부지정 기술평가전문기관에서의 기술평가 실시 여부
- 기술거래, 무형자산 자본산입, 현물출자, 기술투자, M&A 등을 위한 기술평가 실시 여부
- 기타 지원 타당성

지원내용

1. 지원이 가능한 평가의 범위
 - 기술거래, 무체자산 산입, 현물출자, 기술투자, M&A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한 것
 - ※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 : 총 9개 기관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지원한도 : 건당 지원한도
 - 기술평가 수수료의 50%이내에서
 - 기술가치평가 최대 1,000만원까지
 - 기술성, 사업성 평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서류

1. 기술평가비용지원 신청서
2. 평가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입금영수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4. 기술평가기관 및 기업의 기술평가 확인서 (기술평가기관이 양식에 준해 별도로 직접 제출함)

※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기술거래 홈페이지(www.kttc.or.kr) → 사업안내 →
기술이전지원 → 기술평가수수료지원

자금 지원

접수기간

추후공고 예정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본부 가치평가실

1. 전화 : 02-6009-4383
2. 팩스 : 02-6009-4343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15억원
2. 자금성격 : 융자자금

지원대상

국유특허,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개인) 등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 또는 라이선스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우대사항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전년(또는 최근분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또는 확정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지원내용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한도액
담보·보증서부 대출	4.63%(변동금리)	8년(거치기간 3년)	3억원 이내

■ 지원절차

지원계획수립(시행기관 : 특허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사업 공고(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1회 공고
↓	
신청접수 추천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차수별 공고 및 신청자 모집 - 차수별 지원대상자 선정
↓	
자금 지원(취급은행 → 선정자)	- 은행 처리절차에 따라 대출 결정
↓	
사후관리(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추진실태 점검
↓	
결과보고(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 지원실적,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보고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기타 참고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NOTICE
(공지사항) → 해당 지원사업

자금 지원

■ 접수기간

연중수시,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5, 2843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특허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 소개자료(시뮬레이션 등)의 제작 및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5.3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지원대상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www.patentmart.or.kr) 등록기술 중 별도 심사 선정

지원내용

동영상 시뮬레이션 또는 평가서, 패널, 리플릿 제작 등 무료지원

신청서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IP-Mart(www.patentmart.or.kr) → 파는기술 → 등록하기

접수기간

연중수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5, 2843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우수기술수출지원사업

국내 우수 기술·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에서 기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4.2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지원대상

우수 기술의 해외 매매, 라이선싱, 합작투자 희망기관(개인) 및 우수 기술제품을 해외에서 판매 희망하는 기관(개인)

지원내용

1. 한국기술거래소의 해외 협력기관(Agent)과 『기술마케팅 자문 협약』을 통하여, 기술 시장 조사 → 기술 수요자(사업 파트너) 알선 → 협상 → 계약체결 지원 등 Agent 업무를 해외 현지에서 수행
2. 해외 협력기관에 지불하는 기술 마케팅 착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기술 마케팅 계약 착수금의 70%,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본 사업비에서 지원
3. 기타 선정된 기술 건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 전략·절차 자문과 '해외 기술수출 상담회' 참가를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지원
 - ※ 한국기술거래소가 추천하는 검증된 해외 협력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개별적인 해외 에이전트 계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 : 한국기술거래소 해외 협력기관>

자금 지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신청서 접수	- 신청자 → 기술거래소 - 신청 기한내
○		
기술·사업성 평가	심사위원회 기술 사업성, 해외 진출 타당성 심의	- 지원대상 선정 (필요시 기술 실사) - PhaseII 평가 보고서 작성 → 신청자 - 현지 언어로 번역
○		
해외 협력기관 수입 검토	해외 협력기관의 수입 여부 결정	기술거래소 → 해외 협력기관
○		
기술 마케팅 협약 체결	해외 협력기관과 신청자간 협약체결	- 성공 보수금, 협력기관 지원조건 결정 - 착수금 지급 (신청자→해외 협력기관) - 지원금 지급 (기술거래소→신청자) 송금확인 증빙 수령 후 1주일 이내 지급
○		
해외 기술 마케팅 추진	현지 시장조사, 수요자 발굴	- 해외 협력기관 → 신청자 - 보고서 제출
○		
기술수출 상담회 개최	해외 상담회 신청자 : 해외 잠재 수요자 협상 지원	- 주최 : 기술거래소, 해외 협력기관 - 신청자 참가 경비의 일부 지원
○		
기술거래 계약	기술거래 계약 체결 신청자 : 해외 수요자	- 계약조건 협상 지원
○		
종 결	성공 보수금 지급	- 신청자 → 해외 협력기관

신청서류

신청서 접수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합니다. (별도 e-mail 제출 요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기술거래 홈페이지(www.kttc.or.kr) → 사업안내 →
기술이전지원 → 우수기술수출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중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반조성실 안현준 위원

1. 전화 : 02-6009-4345
2. 팩스 : 02-6009-4344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한국기술거래소 해외 협력기관

미 국	DeltaTech International LLC , INGAN Technology Inc., Competitive Technologies Inc. 등
중 국	上海技術交易所, 北京美理來高新技術發展有限公司 등
일 본	한국기술벤처재단 동경사무소
러시아	TRC 등

자금 지원

5

연구개발 및 권리화자금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및 성격

1. 농림기술개발사업 전체 지원규모 : 400억원
2.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 38억원
3. 자금성격 : 출연자금

■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벤처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우선 지원
2. 지원대상기술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제품 기술개발, 친환경농업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 지원내용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절차

과제신청서 접수	- 농림기술관리센터
사 전 검 토	- 사업목적, 공고내용과의 합치 여부 - 중복, 유사 검색 및 통합조정 등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평가	- 비밀 서면평가 - 공개발표를 통한 전문가 평가
농림기술관리센터 선정	- 종합평가보고서에 의한 연구과제(연구팀) 우선 순위 결정 및 과제별 사업비 조정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분야별 사업비 조정 - 과제 심의·선정
농림부장관 확정	- 최종 확정

신청서류

신청서 및 기타서류

자금 지원

※ 신청양식 다운로드 :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에 접속 (Explorer5.0 이상 권장) [사업안내] → [연구과제관련양식]에서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계획서] 를 Download 받아 작성

접수기간 : 10월 예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과제종합관리] → [과제신청서제출]

※ 회원가입(농업전문가 등록)한 총괄연구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수 및 문의처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팀

1. 전화 : 02-2041-7513
2. 팩스 : 02-478-1173
3. 주소 : (우)134-0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18 동화빌딩 5층
4. 홈페이지 : www.arpc.re.kr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의 해양수산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7억원
2.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이나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및 참여연구기관 또는 창업자

- ※ 벤처기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지원내용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2억원 이내	2년 이내

- ※ 기업은 기술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

지원절차



자금 지원

신청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rptf.kmi.re.kr) → 공지사항 →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기술개발자금

접수기간 : 추후공고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벤처지원단

1. 전화 : 02-421-1728
2. 팩스 : 02-425-2930
3. 주소 : (우)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빌딩 1층
4. 홈페이지 : rptf.kmi.re.kr

농업특정연구과제 중 신기술과제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조기 달성하고 농업과학 기초 기반기술 도입을 위하여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10억원
2.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1. 응모자격 : 대학교,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의 연구원
2. 응모과제 : 자유공모과제
 - ※ 과제명 및 연구계획은 응모하는 연구자가 자유로이 정하여 신청
3. 응모방법
 - 연구경험, 연구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관별로 일괄 신청
 - 과제책임자는 신청하는 연구과제의 기술개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산·학·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민, 농민단체를 협동연구자로 참여시킬 수 있음
4. 공모분야 : 작물, 원예, 축산, 농업환경 작물보호, 잠사곤충, 농촌생활, 농기계, 해외 농업
5. 지원대상기술 : 주곡의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 원예 및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 안전 농축산 생산기술 개발
 - 주변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접목 기술 개발
 - 농촌의 생활환경 조성 및 공익기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 21세기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기술 개발

지원내용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50% 이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 75% 이내	연구과제에 따라 별도책정	평균 3년 이내

지원절차

기본계획 수립(전년도 10월)	- 농촌진흥청(연구관리국)	
↓		
자유공모과제 공고 및 접수(전년도 12~1월)	- 농촌진흥청 ↔ 대학, 산업체, 출연연 등	
↓		
신규과제 선정(1월)	- 선정협의회 : 위원장(연구관리국장)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		
연구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2월)	- 농촌진흥청장 ↔ 연구수행 기관의 장	자금 지원
↓		
중간진도관리(연중 수시 실시)		
↓		
연구결과 평가(11월)	- 농촌진흥청장(분야별 평가위원회)	
↓		
보고서 작성·제출(차년도 3월)		

신청서류

- 연구계획서 제출 : 작성된 연구계획서 1부를 관련 공문과 함께 제출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신청 시스템에 등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 연구지원관리시스템 → 농업특정연구사업 서식자료실
- 연구계획서 등록
 - 연구지원관리 포털시스템(http://rims.rda.go.kr)에 회원가입

- 연구과제 신청(<http://rims.rda.go.kr/PORTAL/RIMS/index.jsp>) → 농업특정
연구사업 → 신규과제(전반기) 신청 → 로그인 → 과제 등록

■ 접수기간

2003. 12. 22~2004. 1. 10(20일간)

■ 접수 및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운영과

1. 전화 : 031-299-2620/2628
2. 팩스 : 031-299-2629
3. 주소 : (우)441-707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번지
4. 홈페이지 : www.rda.go.kr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

임업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임업소득 향상과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가공기술 개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임업분야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규모 : 2억원
2. 자금성격 : 출연자금

지원대상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 등

지원내용

1. 중점 지원과제
 -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생산 재배기술 개발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 가공기술 개발
 - 임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영상 애로 해결 기술
 - 임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는 다른 산업분야와 협력 기술 등
2. 출연조건 및 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기간
개발비 전액	5천만원 이내	2년 이내(연차평가결과 계속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자금 지원

지원절차

과제공모	과제지정공모/산학연합동연구팀이 원칙	4월~5월
심의 선정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5월~6월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 연구비 산정비용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6월
수행 관리	중간진도보고, 연차보고, 최종보고(2년과제)	1년 중간평가후 연장
평가	중간진도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2년과제)	과제 선정심의회와 병행
성과활용	- 연구보고서 배포 - 연구성과 설명회 개최 및 기술이전 추진	
사후관리	기술이전, 특허취득, 성과발표회 등 기록 관리	

신청서류

임업공동연구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별지 제1호 서식) 임업공동연구과제신청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a.go.kr(산림정보 → 제도/법령 → 훈령예규 → 임업공동연구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별지 제1호서식))

접수기간

추후공고(5월 예정)

접수 및 문의처 : 산림청 산림정책과

1. 전화 : 042-481-4138
2. 팩스 : 042-481-4129
3. 주소 : (우)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1동 17층
4. 홈페이지 : www.foa.go.kr

해외출원비용융자사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 권리화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15억원
2. 자금성격 : 융자자금

지원대상

1.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후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우대사항
 -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 중소기업이 대기업, 연구기관과 공유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자금 지원

지원내용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심사비, 등록비 포함)
2.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 ※ 기 투자비용도 총융자 신청금액의 20% 이하 인정
3.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방법	대출금리	대출기간	융자비율	한도액
담보·보증서부 대출	4.63%(변동금리)	8년(거치기간 3년)	총비용의 90% 이내	업체당 1억원 이내

■ 지원절차

사업공고	- 관보 및 중앙일간지 또는 경제지 공고
↓	
신청·접수	- 해외출원비용용자사업 신청서 접수 - 연중수시 접수
↓	
중복성 검토 및 서류보완	- 기 용자과제 및 보조과제와의 중복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 중복과제 신청자 이의제기 가능 - 미비서류 보완(마감 이후 7일 이내)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위촉,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심사	- 심사기준 의결, 용자사업자 및 지원액 등 결정 - 7인 이상 출석으로 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용자 추천	- 심사결과 통보(특허청, 신청인, 취급은행)
↓	
자금대출	- 신청인 → 취급은행 - 현물담보 또는 보증서 제공 要
↓	
진도보고서 제출	- 자금 지원 후 익년 1월말까지
↓	
진도 평가	- 권리화 진척정도, 사업비 사용현황, 연계지원 검토 등 추진 실태 서면 심의 - 정상수행, 비정상수행으로 구분 평가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완료평가	- 권리화 진척정도, 사업비 사용현황, 연계지원 검토 등 추진 실태 - 서면 또는 현장출장 조사 후 심사 - 성공, 실패로 구분 평가 - 실패과제는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

■ 신청서류

본회 소정양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공지사항 → 지원사업 안내문

■ 접수기간

제2차 : 2004. 4. 1(목) ~ 4. 15(목)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51/2848

2. 팩스 : 02-3459-2858~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자금 지원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내국인의 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5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 지원대상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소기업자

※ 소기업이라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의미

■ 지원내용

1.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
2. 지급기준
 -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 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급하되 2개국 이상 신청한 동일기술에 대해서는 1개국만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금은 예산배정금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안분조정하여 지급(출원건별로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신청인 1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건수는 선정시 연간 3건으로 제한
 - 외국출원에 소요된 총비용 중에서 국내변리사 수입료는 제외되며, 외국 특허청 관납료, 외국변리사수입료, PCT지정관청수수료 등은 포함됨
 - PCT출원은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 국제단계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지원절차

신청	신청자 →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성평가 의뢰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청
↓	
평가결과 통보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선정결과통보 및 보조금 지급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자

신청서류

본회 소정양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 홈페이지(www.kipa.org) → 공지사항(외국출원비용 보조사업)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

접수기간

연중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4분기(4. 1~6. 30), 3/4분기(7. 1~9. 30)
- 보조금의 지급기간 : 2/4분기 신청건은 3/4분기말, 3/4분기 신청건은 4/4분기말 지급예정

자금 지원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8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산업재산권진단사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 등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집단(진단기관)을 활용,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을 통해 R&D 추진방향과 분쟁발생 대응책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및 성격

1. 특허과제 지원규모 : 3.4억원
2. 자금성격 : 보조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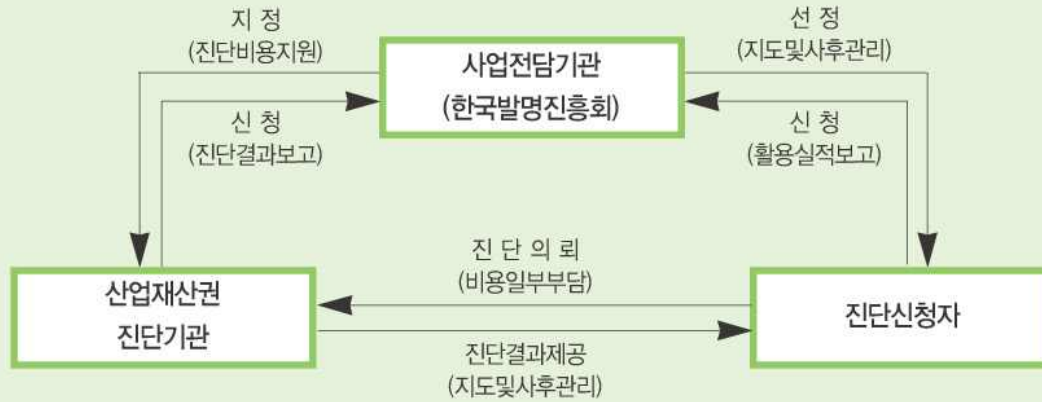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진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내국인인 국내 중소·벤처기업, 조합 및 단체, 국공립·민간연구기관 등이 연구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진단수행범위에 따른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중 진단기관의 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 1기관(업체)당 3개 진단과제까지 신청가능
2. 지원대상과제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정책에 부합하고 국내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산업기술 부문 및 분야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기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주력제품 또는 여성기업가 등에 대해서는 과제선정시 가산점을 부여

지원내용

1.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자체구축된 DB 또는 대민특허정보서비스기관의 특허DB를 이용하여 요청과제에 대한 관련기술의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정보수집
2. 수집된 특허기술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정보적, 경영정보적, 권리정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Patent Map 작성
3. 조사된 특허기술정보와 Patent Map을 활용하여 핵심기술실태분석, 시장 및 기술동향분석, 국내외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제시 및 문제기술의 발굴과 특허클레임에 대한 사전대응책 수립 등 진단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지원절차



신청서류

본회 소정양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사업 홈페이지(www.patentmap.or.kr) → 공지사항 → 지원사업 안내문

접수기간

제2차 : 2004. 5. 10(월)~5. 31(월), 18:00까지

자금 지원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유통팀

1. 전화 : 02-3459-2863~5
2. 팩스 : 02-3459-287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patentmap.or.kr

진단기관현황 및 진단분야

진 단 기 관	진 단 분 야	연 락 처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정밀화학/재료, 환경/에너지	02-3299-6060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산업	042-860-4720
3. (주)인포클루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031-718-7083
4.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정밀화학/재료, 식품	031-780-9172
5. 패턴트인포	기계, 전기/전자	02-574-0470
6. 테크빌특허사무소	기계, 전기/전자, 화학/미생물, 식품/생활/섬유/토건	02-566-6333
7. (주)아이피테일러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분야	02-732-9490
8. Lee & Kwon특허사무소	전기/전자, LCD/광학/재료	02-3453-3692
9. 하나특허정보(주)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02-522-0555
10. (주)위더스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화학/재료, 일반	042-863-7727
11. 김종수특허사무소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02-3452-1431
12. YOU ME특허사무소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02-3466-0363
13. 유니스특허사무소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02-564-7734
14. (주)윈스랩	의약, 화장품, 식품, 생명공학	031-682-6111

간접지원



1. 특허정보제공
2. 권리화지원
3. 전문인력양성
4. 기술·경영지도
5. 기술인증·보증지원
6. 기술평가·거래지원
7.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특허기술정보조사분석(patent map) 보급

특허기술정보조사분석(Patent Map) 보고서의 보급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제시 등 특허기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PM(Patent Map)의 정의 :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권리정보)과 기술적 사항들을 정리 및 가공하여, 분석결과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도표화 한 것

지원내용

1. PM 전문 Web 서비스 운영
 - 산업재산권 및 각종 특허제도, 특허정보 등에 대한 내용 소개
 - 수행된 기술과제(96개) 및 Raw Data에 대한 내용 조회 등
2. 기술테마별 CD-ROM 발간보급
 - 산업별 5개(최신기술개발동향 보고서 포함) 1Set 총 3,000Set 발행
 - 국·공립도서관, 해당분야관련 연구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무료배포
3. PM 작성기법 보급 및 연구개발 지원
 - 특허기술조사 분석 관련 지식보급 및 PM 작성방법에 대한 실무교육
 - 교육대상 :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 등에 소속된 연구원 및 특허담당자
 - 기술지도사 파견에 의한 현장밀착교육
4. 세부내용 조회 : 사업 홈페이지(www.patentmap.or.kr) → 공지사항 → 지원사업 안내문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유통팀

1. 전화 : 02-3459-2863~5
2. 팩스 : 02-3459-287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patentmap.or.kr

2 권리화지원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출원료 등 수수료를 감면하여 특허권리 확보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감면
 - ※ 개인 및 소기업 7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2. 면제 및 감면 대상 수수료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 12. 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됨
3.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4. 세부내용 조회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전자민원창구 → 산업재산권 종합안내 → 수수료 →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접수 및 문의처 : 특허청 종합민원실

1. 전화 : 1544-8080
2.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3. 홈페이지 : www.kipo.go.kr

전문인력양성사업

대상별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지재권교육을 제공하여 범국민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지재권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온라인, 오프라인 발명지재권 교육사이트(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2. 교육과정
 - 온라인 교육(무료)

구분	대상	과 정 명
청소년분야 (11)	초중생(4)	· 꼬마에디슨 교실 ·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 발명의 등불을 켜라 · 발명대회 참가하기
	중고생(2)	· 발명! 함께 일어서기 ·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발명
	지도교사 분야(4)	· 발명반 지도 교사과정 발명반운영 및 출원지도 · 효과적인 발명반 지도법 발명품 제작실무과정
	학부모 분야(1)	·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
일반인분야 (25)	일반인 (기초,중급)	· 지식재산권기초 · 알기쉬운 특허관리 * · 발명자를 위한 특허 이야기* · 전자출원 실습 특허 명세서 작성(2) · 특허 명세서 작성(1) 특허 정보검색 기초 · 특허정보 검색기초 · 특허정보 길라잡이 · 효율적인 특허획득 및 관리전략*
	전문가(고급)	·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과 기업경영 · e-biz 시대, 소프트웨어특허의 관리 전략 · 특허명세서 작성(3) · 특허법 · 의장법 · 특허정보검색 고급 · 상표법
	자격증 과정	·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1차시험) · 2002년 변리사시험 기출문제풀이과정(2차시험) · 2003년 변리사시험 1차 : 특허실용신안법 · 2003년 변리사시험 2차 : 상표법 · 상표법 · 의장법 · 특허법

IT교양 과정 (20)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wer point2000 쉽게 배우기 PC 조립쉽게 배우기 · 홈페이지 쉽게 배우기 crm(고객관계관리) · e-commerce 바로알기 excel2000쉽게 배우기 · 지식경영의 실천 창의력으로 승부한다 · 디지털시대의 리더쉽 인터넷비즈니스 전략 · 나도 인터넷박사 마케팅기본 · 사례로 알아보는 PL법-가전업종 식품업종 · 사례로 알아보는 PL법-자동차업종 화학업종 · 문제해결기법 효과만점 프리젠테이션 · CTM(창조적 시간관리) E-Transformation
-----------------	-----	---

- 오프라인 교육

분야	교육 과정 명	교육기간 (시 간)	2004년 월별 교육일정												교육훈련비 (단위: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원	비회원			
일반인	지식재산권기초 - 특허입문자를 위한 과정	3일 (24시간)		9(월) 11(수)						28(월) 30(수)				4(월) 6(수)			290	340	
	특허·실용신안실무 - 특허담당자 기본이론 함양을 위한 과정	3일 (24시간)				19(월) 21(수)											290	340	
	의장상표실무 - 의장상표담당자 기본이론 함양을 위한 과정	3일 (24시간)					10(월) 12(수)										290	340	
	특허관리전략 연구 - 전략적 특허관리 업무능력향상	3일 (24시간)							7(월) 9(수)					11(월) 13(수)			290	340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3일 (24시간)		23(월) 25(수)						12(월) 14(수)							290	340	
	특허정보 검색·분석전문 - 특허담당자의 특허검색능력 및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3일 (24시간)			8(월) 10(수)							6(월) 8(수)					290	340	
	외국의 특허제도연구 (미국, 일본, 중국, EPO, 유럽)	3일 (24시간)			29(월) 31(수)												290	340	
	특허침해 소송 전략	3일 (24시간)												8(월) 10(수)			290	340	
	특허담당자 능력 향상 과정 ★2004 신규과정	3일 (24시간)				26(월) 28(수)											290	340	
	기술이전 & 계약사례와 실무	3일 (24시간)								21(월) 23(수)							290	340	
	특허분석 전문 - 특허맵작성 전문가 양성	3일 (24시간)											25(월) 27(수)				290	340	
	최근 특허분쟁사례와 대응전략 연구 (미국, 일본, EPO, 유럽)	3일 (24시간)											13(월) 15(수)				290	340	
	특허기술평가연구	3일 (24시간)												22(월) 24(수)			290	340	
	특 별 코 스	해외출원 전략 (04 변경되는 PCT출원중심) ★2004 신규과정 · 비환급과정	3일 (24시간)			23(화) 24(수)													
		Patent Map 단기 · 비환급과정	2일 (14시간)			23(화) 24(수)												100	130

3. 세부내용 조회 :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홈페이지(www.ipacademy.net) →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교육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팀**

1. 전화 : 02-3459-2774
2. 팩스 : 02-3459-278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 www.ipacademy.net

기술거래전문인력양성

기술거래·기술가치평가, M&A전문가 과정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외 선진기법을 습득하고, 해당업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과정 서비스 영역

- 오프라인 교육
 - 기본과정 : 기술거래
 - 심화과정 : 기술거래, 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 벤처기업거래과정 : M&A전문가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강좌 개설(오프라인 교육일부 연계, <http://edu.kttc.or.kr>)
- 컨설팅 서비스
 - 직무분석
 - 역량진단
 - 교육체계 수립
 - 교육 마스터 플

2. 강사진 : 국내 최고의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투자, M&A 전문가 집단

3. 교육비 : 총 80만원(국비 40만원 보조, 부가세 포함)

4. 세부내용 조회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 → 사업안내 → 전문인력양성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기반조성실

1. 전화 : 02-6009-4346
2. 팩스 : 02-6009-4344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4

기술 경영지도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 및 기술지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2. 지도분야
 - 설계, 부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시제품모형(Mock-up)제작 등
 - 디자인(제품, 시각, 포장)
 - ※ 경영컨설팅, ISO 시스템 구축 등 타 사업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
3. 지도분야별 비용
 - 일반 지도(과제와 지도위원이 다를 경우 추가지도 가능)
 - 지도일수 : 과제당 최고 20일까지
 - 1일 지도비용 : 144,200원(업체 36,000원, 정부 108,200원)
 - 디자인 지도(업체당 각각 1개만 인정)
 - 제품디자인 : 1건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 기타디자인(시각, 포장) : 1건당 150만원까지 지원
 - ※ 지도위원의 출장비는 시내교통비(10,000원)를 제외한 금액은 업체부담
 - ※ 부담률 : 정부 75%, 업체 25%
 - ※ 지도 종료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재지도 실시 (업체 부담금 면제)
4. 세부내용 조회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기술지원 → 해당 지원사업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홈페이지 : www.sbc.or.kr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지 역	전화번호	FAX	지방중소기업청 주소
서울지방청	02) 509-7016	02) 504-6548	경기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 울산지방청	051) 601-5131	051) 335-4335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 경북지방청	053) 659-2229	053) 654-1714	대구시 달서구 송현 2003-18
광주 전남지방청	062) 360-9133	062) 366-9662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청	031) 201-6955	031) 201-695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1012-2
인천지방청	032) 450-1155	032) 818-8339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445-1 30B
강원지방청	033) 260-1632	033) 260-1639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 230-5332	043) 235-249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청	063) 210-6443	063) 210-6449	전북 전주시 덕진구팔복동2가270
경남지방청	055) 268-2551	055) 262-507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064) 723-2104	064) 723-2107	제주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 충남 지방사무소	042) 865-6134	042) 865-6139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2

※ 대전 충남지역은 대전 충남지방사무소 기술지원팀

경영·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 및 경영·기술지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경영지도
 - 경영종합관리 능력 향상(경영종합진단지도)
 - 경영의 단위부문, 경영 전분야의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개선책 강구
2. 기술지도 및 비용
 - 현장애로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국내전문가와 외국인전문가에 초청지도 실시
 - ※ 공정개선(자동화)분야, 공업 및 생산기반기술분야, 부품 소재 기술분야 등
 - 총비용의 4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
3. 세부내용 조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컨설팅/연수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지도실

1. 전화 : 02-769-6976, 6978
2. 팩스 : 02-769-6850
3. 주소 : (우)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4. 홈페이지 : www.sbc.or.kr

기술 · 경영지도

중소 · 벤처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지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 · 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도 및 자료제공

1. 지도대상

- 신용보증기업
- 기타 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2. 지도분야

- 경영관련분야 : 경영일반, 인사조직관리, 세무회계, 재무관리, 판매관리
- 기술관련분야 : 공정관리, 생산관리, 자동화, 품질관리

3. 지도담당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외부자문위원 등 기술경영지원단

- ※ 기술, 경영분야의 전문인력 Pool로서 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기타 기술 · 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로 구성

4. 비용부담 : 소요비용의 70% 이상을 신청기업이 부담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실

1. 전화 : 02-789-9322~3
2. 팩스 : 02-789-9320
3. 주소 :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10층
4. 홈페이지 : www.kibo.co.kr

디자인컨설팅사업

중소기업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상품 개발을 촉진키 위해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예산 : 3억원

2. 지원대상

-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기업
- 농·수·축산, 임업 생산사업자

※ 우대지원기업(정부지원비율 5% Point 상향지원)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 2002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성공기업
- 2003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신기술 idea 타당성 평가사업」우수과제 보유기업

2. 지원분야 : 제품·브랜드·캐릭터·포장·시각디자인 분야

3. 지원과제수 : '04년 디자인분야 컨설팅 지원계획은 60개 과제 정도

- 1개 과제당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60%는 정부지원, 나머지 비용은 중소기업 부담
- 총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비용을 산출

※ 단, 모든 사업비(정부지원금+업체부담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써 컨설팅 참여 중소기업 부담임

ex) 정부지원금 및 업체부담금 산출 예시

총 컨설팅비용 1,000만원인 경우

- ▶ 총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 정부 지원금 : 600만원(60%), 업체부담금 : 400만원(40%)
 - 부가가치세 : 100만원(업체부담) ⇨ 업체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 = 500만원

- ▶ 총 컨설팅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우대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 정부 지원금 : 650만원(65%), 업체부담금 : 350만원(35%)
 - 부가가치세 : 100만원(업체부담) ⇨ 업체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 = 450만원

4. 추진시기

- 사업기간 : 2004. 2. 23~10. 31
- 신청 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5. 세부내용 조회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esigndb.com) → 지원사업 → 해당 지원사업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팀

1. 전화 : 031-780-2090
2. 팩스 : 031-780-2093
3. 주소 : (우)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4. 홈페이지 : www.designdb.com

5 기술인증 · 보증지원

기술우대보증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우수판정」기업 등을 기술우대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보증 심사시 기술력 위주로 검토하는 등 우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

1. 대상기업

- 특허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우수판정」기업
- 기보선정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기술 및 품질 인증기업(KT, NT, EM, 100PPM 등)
- 중기청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정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 산업자원부 일류화 상품승인업체,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업체
- 정보통신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우수신기술(IT)마크 지정업체 등

2. 우대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8억원까지 간이심사 적용
- 정보화 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개발관련자금에 대해 보증금액 사정시 특례인정

- #### 3. 세부내용 조회 :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co.kr) → 신용보증안내 → 우대지원제도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기술평가센터

1. 전화 : 02-789-9472, 9482
2. 팩스 : 02-789-9484
3. 주소 :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10층
4. 홈페이지 : www.kibo.co.kr

기술평가보증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기술평가 및 보증 심사하여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해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용조사, 보증심사하여 보증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련된 보증제도
2. 세부내용 조회 :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co.kr) → 신용보증안내 → 우대지원제도

■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기술평가센터

1. 전화 : 02-789-7472, 9482
2. 팩스 : 02-789-9320
3. 주소 : (우)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10층
4. 홈페이지 : www.kibo.co.kr

신기술인증(NT, EM 등)지원사업

국내에서 3년 이내에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해서 신기술 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처리절차 : 접수 → 평가 → 종합평가 → 결제 및 통보
2. 소요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
3.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구매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지원, 정책자금 융자의 우선대상 지원 등
4. 세부내용 조회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 → 바로가기 → NT/EM

접수 및 문의처 : 기술표준원

1. 전화
 - 화학분야 : 화학응용표준과 | 02-509-7354
 - 기계분야 : 자본재표준과 | 02-509-7281
 - 전기/전자분야 : 전기기기표준과 | 02-509-7296
2. 주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3. 홈페이지 : www.ats.go.kr

기계공제조합 하자보증우대지원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에서 품질과 성능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각종 채무이행보증(입찰/계약/차액/지급/하자)을 민간보험사에 비해 우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보증대상 : NT, EM, GR, EEC 인증제품
2. 보증종류 및 한도 :
 - 입찰보증 : (출자지분의) 10배
 - 하자보증 : 50배
 - 계약/차액/지급보증 : 20배
 - 총 보증한도 : 80배
2. 보증요율
 - 입찰보증료 : 건당 0.05%
 - 하자보증료 : 년 0.3%
 - 계약/차액/지급보증료 : 년 0.5%
3. 세부내용 조회 : 기계공제조합 홈페이지(www.mic.or.kr) → 해당 지원사업

접수 및 문의처 : 기계공제조합

1. 전화 : 02-369-8500
2. 팩스 : 02-369-8520
3. 주소 : (우)150-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3층)
4. 홈페이지 : www.mic.or.kr

6

기술평가 · 거래지원

발명의 기술가치평가

발명의 사업화와 이전확산을 위한 기술의 사업성, 기술가치평가 수행 및 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기술거래, 무체자산 산입, 현물출자, 기술투자, M&A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명의 기술가치를 평가
2. 평가수수료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단, 신청인 1인당 연간 4건 이내에서 지원하며, 동일권리로 중복 평가를 받은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건의 평가수수료만 지원
3. 세부내용 조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kisti.re.kr) → 과학기술 정보분석 → 기술가치평가(itechvalue) → 해당 지원사업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확산사업실

1. 전화 : 02-3299-6054~5
2. 팩스 : 02-3299-6244
3. 주소 : (우)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4. 홈페이지 : www.kisti.re.kr / www.itechvalue.org

기술가치평가

산업재산권 등 기술에 대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무형의 자산가치를 평가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평가용도

- 기술이전 · 거래용 기술가치평가
-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법원 경매용 산업재산권 평가

2. 평가절차

평가상담 → 신청, 접수 → 예비평가 → 본평가 → 기술자문 → 평가심의 → 평가결과 통보

3. 평가수수료

- 정액평가료 : 주로 정부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벤처기업지원정책에 부응하고자 일정금액을 정하여 저가로 서비스
- 계약평가료 : 평가인력, 평가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

4. 세부내용 조회 :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co.kr) → 기술평가센터 → 주요평가사업 → 기술가치평가

접수 및 문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기술평가센터

1. 전화 : 02-789-7472, 9482
2. 팩스 : 02-789-9320
3. 주소 : (우)150-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기보빌딩 10층
4. 홈페이지 : www.kibo.co.kr

특허기술사업성평가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기술평가 완료된 것)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 시장성, 사업화가능성 등의 분석을 통해 기술성·사업성을 평가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평가절차

평가의뢰서 →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제안서(평가기간 및 수수료) → 평가계약서 작성(비밀유지포함)과 계약 → 평가착수(수수료 50%납부) → 평가완료(수수료 50%납부) →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 분기별로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평가과제 적정성, 평가활용계획, 국가산업발전기여도 고려)

2. 평가수수료 지원 : 기술평가 수수료의 8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신청인 1인당 연간 최대 4건) 지원

3. 세부내용 조회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 사업안내 → 기술평가 → 특허기술사업성평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가치평가실

1. 전화 : 02-6009-4303

2. 팩스 : 02-6009-4343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IP-Mart(인터넷 특허기술장터)

특허기술의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기술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버상에서 특허기술거래 전문 포털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지원내용

1. Cyber상에서 특허기술의 이전·거래를 무료로 지원
 - 이전 대상 특허기술 정보제공
 - 기술거래 및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이용자간의 자율적인 특허기술거래에 참여유도
2. 구축현황 : 개인,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래대상기술 25,500건, 사업화정보자료, 29,500건 의 기술이전·거래정보 보유
3. 이용절차
 - 회원등록
 - 서비스 이용(IP-Mart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4. 세부내용 조회 : 사업 홈페이지(www.patentmart.or.kr) → 사업안내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43, 5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patentmart.or.kr

기술이전 DB 서비스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보를 기술성, 시장성 자료를 갖춘 고급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에서 상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홈페이지상에서 관심있는 기술 또는 구매 및 이전을 원하는 기술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가능(<http://www.ntb.or.kr>, 한글로 '국가기술은행' 입력)
2. 서비스현황 : 전기전자, 생명화학, 기계소재 등 각 분야 우수 기술정보 14,000여건
검색서비스, 기술성 및 시장성 고급정보 1,400여건, 기술시장정보 300여건 등
3. 기술이전정보의 내용
 - 기술보유자 및 개발자 정보
 - 기술의 개요 및 특징
 -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 기술개발상태 및 이전조건
 - 기술/시장동향 및 기술성, 사업성 분석평가 자료 등
4. 이용절차
 - 회원등록(기술매도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등 기술거래에 관심있는 자)
 - 현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향후 유료화 예정)
5. 세부내용 조회 : 사업 홈페이지(www.ntb.or.kr) → 사업안내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정보유통실

1. 전화 : 02-6009-4388
2. 팩스 : 02-6009-4343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지역기술이전거점구축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의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지역기술이전거점을 선정하고 해당지역 기술이 원활히 유통, 거래 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기술이전활동 촉진 및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1. 지역기술이전거점 설치
2. 이전상담사업비 지원
3. 지역거점간 종합연계체제 구축
4. 기술이전프로그램 운영지원
5. 기술이전정보 유통체제 구축
6. 국내외 기술마케팅 알선
7. 기술이전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원규모

거점 당 2억 미만(2004년 4개거점 추가지원 계획)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정보유통실

1. 전화 : 02-6009-4358
2. 팩스 : 02-6009-4344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 4 홈페이지 : www.kttc.or.kr

기술이전 및 평가정보 지원

기술의 이전·거래를 위한 온라인 홍보와 관련 지원정보의 제공 및 정보교류의 장(場)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1. 거래희망기술정보를 온라인 사이트(www.technomart.org)에 등록하여 국내외 소개
2. 국내외 기술이전 관련 지원정보 지원
 - 기술이전마케팅/사례, 기술평가, 산업재산권 분쟁정보, 인증정보, 기술이전 관련 기관, 법률정보, 동향정보, 연구자료, 행사정보, 기술사업화 정보 등
3. 기술이전 전문가 온라인 상담 및 커뮤니티 활동
4. 세부내용 조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kisti.re.kr) → 과학기술정보분석 → 국제기술시장(www.technomart.org) → 해당 지원사업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혁신사업실

1. 전화 : 02-3299-6054~6
2. 팩스 : 02-3299-6244
3. 주소 : (우)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4. 홈페이지 : / www.kisti.re.kr / www.technomart.org / www.itechvalue.org

우수특허제품 e-마켓플레이스구축사업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의 우수 특허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및 유통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제품 전용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1. 주요사업내용

- 전자카탈로그 DB 및 거래커뮤니티 구축
- e-마켓플레이스구축 및 실거래확산('04년 10월 30일(토) 오픈예정)
-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글로벌 온라인 거래체제 구축

2. 기대효과

- 국가산업 및 기술경쟁력 증대
- e-비즈니스 마인드 및 국가전자상거래 확산
- 발명의식 고취
- 지재권 선진국의 위상강화

3. 주요지원내용

- 2D 및 3D의 최첨단 전자카탈로그 무료제작
 - ※ 단, 정부지원시까지 입점심의적격에 한하여 무료제작
- 입점업체 등록비 및 거래수수료 일체무료
 - ※ 단, e-마켓플레이스 정식 오픈시점부터 1년간 무료
- 입점기업의 홍보, 마케팅 및 영업활동 지원
- 입점상품의 다국어 변환 및 해외수출판로 개척지원 등

4. 입점기업 자격요건 : 특허(실용신안)기술을 보유(권리자 또는 실시권자 등)하고 있고, 해당기술을 상품화한 국내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기업 등

5. 입점상품 기본요건

- 국내기업 보유의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기술로서 구성된 제품이어야 함
- 판매가능(완제품)하며, 재고(공급가능)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B2B 및 B2C 등 전자상거래 유형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함

6. 입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바이인벤션 홈페이지(www.buyinvention.com)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정보유통팀

1. 전화 : 02-3459-2868~9
2. 팩스 : 02-3459-287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buyinvention.com

국제전시회 출품지원

우수 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하여 출품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및 중소기업자
2. 지원자격 : 한국발명진흥회가 국내 주관하는 국제전시회 출품자
3. 지원사항
 - 진열대(부스)사용료 및 카다록 게재료
 - 1개 전시회 1개 진열대(부스)의 최저 소요비용 이내
 - 통역료
 - 한국발명진흥회가 인정하는 통역비용중 출품건당 10만원 이내
 - 번역료
 -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하여 10만원 이내
- ※ 연말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안분 조정되어 출품보조금이 지급됨
4. 지원절차



5. 출품자 특전

-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시 무료전시 가능
- 우리회 홈페이지내 사이버전시관에 게재를 통한 발명품 홍보지원(유료)

- 발명의 날 포상 신청시 수상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 IFIA(국제발명가협회연맹)에서 운영하는 발명품 홍보사이트에 무료게재를 통한 해외홍보 지원
6. 세부내용 조회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발명진흥/전시 → 국제발명품전시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1. 전화 : 02-3459-2796
2. 팩스 : 02-3459-2819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우수발명우선구매추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증대를 이루어 중소기업자 및 개인발명가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기술개발에 투자된 자금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
2. 우선구매 추천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구매희망기관에 우선구매 추천 및 사후 관리
3. 추천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4. 세부내용 조회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우수발명우선구매추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1. 전화 : 02-3459-2851
2. 팩스 : 02-3459-2858
3.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한국발명진흥회
4. 홈페이지 : www.kipa.org

기술이전설명회

설명회를 통해 대학, 연구소,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수요기관, 투자기관 등에 소개하는 등 기술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상설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주1회 개최)
 - 정보통신, 생명화학, 기계소재 등 매주 기술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현장 상담추진
2.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으로 병행 운영되며, 소개되는 기술의 거래 성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실시
3. 기술이전설명회에 출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출시기술을 홍보하고
 - 기술소개 책자의 제작 및 설명회 장소를 제공하여
 -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기술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
4.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게는
 -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도입 관련 제반 사항을 지원
5. 세부내용 조회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 사업안내 → 기술이전지원 → 기술이전설명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정보유통실

1. 전화 : 02-6009-4358
2. 팩스 : 02-6009-4344
3. 주소 :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4. 홈페이지 : www.kttc.or.kr

중소기업제품홍보지원사업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

구분	매체 및 프로그램	홍보방법 및 내용
국외홍보	아리랑 TV "company close up"	수출유망제품 해외홍보(영어 위성방송) 전세계 지역별 주3회 방송
국내홍보	MBN TV "중소기업아이디어세상"	우수 아이디어 생활용품 소개 매주 수요일 18:20 방송(재방송 2회)
	한국경제신문	산업재, 중간재 등 제품 소개 매주 수요일

2. 홍보업체 연계(중복)지원

- 국내연계홍보

- 우리홈쇼핑 : 월 2~3회 방송/판매 지원(방송제작비의 50%는 업체부담)
- 매일경제신문 : 매주 월요일 『중기우수상품』 코너에 홍보

- 국외연계홍보

- 무역일보 : 매주 월요일 『Best Product』 코너에 홍보
- 영문상품정보지 : 월간 『코리아바이어스가이드』에 제품 홍보 → 전세계 바이어에 송부(월 25,000부 발행)

3. 공통홍보

- 비즈넷타임즈 : 중앙일보 유통전문지(주간지)
- 신용사회 : 신용보증기금 발간(월간지)
- 테크타임즈 : 중진공 발간(월간지)

※ 특허(실용신안) 획득업체는 우선 홍보지원

4. 세부내용 조회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판로/수출 → 해당 지원사업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기마케팅팀

1. 전화 : 02-6678-9315, 9313
2. 팩스 : 02-6678-9690
3. 주소 : (우)158-051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6 행복한세상 7층
4. 홈페이지 : www.smba.go.kr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NT, EM 등의 인증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토록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의 우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NT, EM, GR 등의 인증제품은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조치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요청

-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NT, EM 등 신기술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우선구매를 요청

접수 및 문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1. 전화 : 02-509-7281
2. 팩스 : 02-507-1923
3. 주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4. 홈페이지 : www.ats.go.kr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Tel. (042)481-5178
Fax. (042)472-3464
<http://www.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Tel. (02)3459-2846~50
Fax. (02)3459-2858
<http://www.kipa.org>